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행정조직

제2조 (단장의 자격)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이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 (부단장의 자격) 산학협력단에 약간 명의의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부단장은 본교 소속 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기구)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기획팀, 산학감사팀, 연구진흥팀,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AI1SET센터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산학기획팀) 산학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기획
2.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산학협력단 법인업무
4.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5.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산학협력사업의 이행
8.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9.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
10.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11. 산학협력 재원의 확충
12. 산학협력 정보 수집·제공·홍보
13. 산학협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폐의 입안
14.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 업무
15. 산학협력단 부서간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16. 기타 위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의2(산학감사팀) 산학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실시(정기, 특별, 일상감사)
2. 중앙구매한 연구장비 및 재료 등의 검수

3. 산학협력단지체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제5조의3(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연구의 진흥 및 기획
2. 산학협력 연구 및 연구비 관리
3. 산학협력단 R&D 연구소 및 R&D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4. 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
5. 연구자 및 연구관리 인력의 교육
6. 중앙구매(입찰포함) 및 계약
7.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8. 산학협력 연구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폐의 입안
9. 산학협력단 관련 회계 관리
10. 산학협력 연구 재원의 확충
11. 기타 산학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2. 기술경영 지원
3. 교육세미나 개최
4. 생명공학분야 특수연구소재은행 운영
5. 외부업체나 기관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자문, 공동기기 지원

제6조의2(산학협력AIISET센터) 산학협력AIISET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회사 발굴
2. 가족회사 계약 및 지원
3.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기타 기업지원 관련 업무

제7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 및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3. 경영 및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 제공
4. 창업 및 기술개발 자금을 관한 정보 서비스 제공
5. 서울여자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 제공
6. 기타 창업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특강, 창업세미나, 창업강좌 운영 등의 학생 창업교육
2. 창업아카데미, 전공창업교실 등의 예비 창업자교육
3. 예비창업 입주자 선정 및 퇴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경영 및 기술개발 컨설팅 서비스 제공
5. 기타 창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협의회

-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단장, 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2.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산학협력단의 해산
  4. 산학협력단 재산의 처분
  5.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교외 연구비,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9.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
  10. 산학협력단 R&D 연구소 및 R&D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11. 교수창업 심사 및 운영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산학협력협의회)**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 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교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 ⑤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 제10조 (회의소집 및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와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와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산학협력사업

제12조 (산학협력사업의 추진)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추진기구 또는 사업팀을 설립,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산학협력사업의 제안) ①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취지
2. 사업계획 및 재정보호계획
3. 시설·공간·인력확보계획
4. 참여자의 명단 및 실적
5. 산학협력추진기구 규정안

② 산학협력사업추진기구 규정의 제·개정은 본교의 규정류의제정및관리에관한규정을 따른다.

③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팀을 설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제5호의 규정안은 단장을 일방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안으로 대체한다.

제14조 (산학협력사업의 조기 종료) 단장은 다음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한 바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산학협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6. 기타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5 장 회 계

제15조 (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회계처리) 산학협력사업 관련 회계업무는 본교 사무처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감사)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는 매년 1회 본교 법인 정기감사시 함께 실시한다.

## 제 6 장 연 구 관 리

제18조 (연구관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및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제19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0조 (구매) 산학협력단에서 소요되는 물품, 공사, 제조 및 용역의 구매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본교 물품구매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물품관리)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본교 물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류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제2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04 제17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8호 개정, 제20조 삭제, 제17조, 제18조 삽입,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9조 내지 제21조로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제22조 내지 제24조로 조번호 변경 <'05 제12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항 개정, 제6조 개정 <'08 제6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항 개정, 제5조 개정 <'09 제16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개정<'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제7조 개정 <2011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7조의2 신설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8조제5항 개정 <2016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5항 개정 <2017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9조, 제2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제5조 개정,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2 신설,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2조 개정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항, 제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2020 제5차 교무위원회>)